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6536호 2021년 5월 17일(월)

경 상 북 도

■ 훈 령

회				
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고 시

0	환지계획 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54호)
0	사방지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55호)24
0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변경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56호)
0	도무형문화재 인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57호)
0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58호)
O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59호) ····································
0	20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60호)42
	¬ ¬
	공 고
0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087호)45
0	측량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091호)
0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097호)

0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098호)	50
0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1103호)	52

시 군

■ 고 시

0	김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김천시 고시 제2021-57호) ····································	59
0	김천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김천시 고시 제2021-58호) ····································	61
0	구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1-89호) ····································	103
0	고령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령군 고시 제2021-642호) ····································	122
0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21-84호)	132

■ 공 고

○ 구미 도시계획시설(자동자정류장:공동차고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기 타

■ 고 시

0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63호)	
0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64호)	149
0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65호)	150
0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66호)	151
0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67호)	152
0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68호)	153
0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69호)	154
0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70호)	
0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71호)	156
0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72호)	157
0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74호)	
0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75호)	

제6536호	경	상	북	도	보	2021.	5.	17.(월)
■ 지시사항								
○ 도지사 지시사항						••••••	•••••	··· 161

경 상 북 도

훈 령

경상북도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1년 5월 17일

경상북도 훈령 제1586호

경상북도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령

경상북도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성희롱 서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 성폭력방지기본법 시 제18조에 따라 경상북도청 내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 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소속 구성원 (경상북도 또는 소속기관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경상 북도의 지도·감독 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3. "2차 피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를 말한다.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와 직속기관·사업소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 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 2.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 운영(2차 피해 포함)
 - 3. 성희롱 서폭력 고충처리절차 마련(2차 피해 포함)
 - 4. 성희롱 서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5.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홍보
 - 7. 성희롱 서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8. 그 밖에 성희롱 서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등
- ② 도지사와 직속기관·사업소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 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와 직속기관·사업소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여성폭력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 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2장 성희롱 서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 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 처리를 위하여 여성정책부서에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 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 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복무 및 여성정책부서 담당공무원을 포함 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고 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후련을 지원한다.
 -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2. 성희롱 , 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3. 성희롱 서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 4. 성희롱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 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이버신고센터) ①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도지사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 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7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

제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① 도지사와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 ·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희롱 서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 2. 성희롱 , 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성희롱 서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보호조치
- 4. 성희롱 , 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6. 그 밖에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와 직속기관·사업소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여성정책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성희롱 서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제9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

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고충상담원은 도지사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을 접수할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 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도지사와 직속기관·사업소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 ·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도지사와 직속기관·사업소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 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

로 실시할 수 있다.

- ⑥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 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⑧ 조사 과정에서 여성정책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⑨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⑩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도지사(인사 ·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 · 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도지사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에서 규정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성희롱 서폭력 심의위원회 등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여성정책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도청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명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명을 포함하되,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책에 따라 임명하는 경우는 그 직에 해당하 는 자가 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 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⑥ 도지사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외부위원의 추천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⑦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넘기도록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도지사가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도지사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 1. 성희롱 , 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4. 그 밖에 성희롱 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 제16조(징계) ① 도지사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③ 성희롱 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행위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 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 ②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 ③ 도지사는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 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고충접수 및 처	리대장			
접수	접수	신	청인		21-1-1-1	회신	확 '	인
번호	일자	성명	소속부서	고충내용	처리결과	일자	성희롱방지 업무 담당	여성정책 부서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성폭i	력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담당자		(서명)
	신청인	성 명		소속	
	ଅଟିଥି	직 급		성 별	
당사자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	성 명		소 속	
경사자	※ 내디인이 신성 하는 경우	직 급		성 별	
	행위자	성 명		소 속	
	% T/Y	직 급		성 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 증인의 유무		레가 되는 행위, ㅈ]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중지()) 4. 기		
처리결과					
※ 관련 자료	첨부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 154호

환지계획 인가 고시

2017년도 시행한 삼계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 지구명 : 삼계2지구

2. 사업구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삼계수리 일원

3. 종 전 토 지 : 소유자 112명, 면적 285,137.0㎡

4. 환 지 : 소유자 91명, 면적 285,265.7㎡

5. 환지 청산금 : 207,161,320원

6. 환 지 내 용 : 삼계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청(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

진지사)에 준비되어 있는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155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경상북도지사

-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1년 사방사업 및 2020년 산림피해복구사업 시행
-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054-420-87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지정 고시내역서

K	재 지		1	전체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수요	1
, 1	유	지 번	<u>소</u> 뉴	(m²)	(m²)	茶	£₀ ∄o	多	扫
		61		2,512,763	9,096				
		26		1,372,203	2,656				
圣中	강한	산23-3	[O	29,018	92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49	권정의	산지 사방	대표기번
조마	강합	산77	七	611	41		(낙울판골논)	산지 사방	
조마	대방	산136-1	[라	779,224	3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비동 1216호	주식회사 대방에너지	산지 사방	
	二岛	산22-1	딩	30,990	28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67-1, 신일아파트 509-1503	장석주	산지 사방	
조마	신과	산233-2	По	3,696	108	김천시 조마면 신곡동 764	강추시	산사태 복구	대표 지번
조마	신곡	389	中	775	51	김천시 시청로 42, 203동 501호(신음동,현대아파트)	손권하	산사태 복구	
조마	신곡	390–2	전	955	36	칠곡군 약목면 복성13길 24, 111동 103호(오성타위맨션상가)	전균의	산사태 복구	
조마	신곡	390–3	力皿	4,300	96	칠곡군 약목면 복성13길 24, 111동 103호(오성타위맨션상가)	전균의	산사태 복구	

, who is a second of the secon	지목 전체면적 지정면적 (m²) (m²)		지정면?	(TET	소유자 또는 점유자	平°	A 의	山江
조마 심곡 391-1 담 503 12 조마 심곡 산184 임 121,079 91 조마 심곡 산185 임 232,617 116 조마 강곡 산185 임 12,219 64 조마 강곡 산13 임 12,219 64 조마 강곡 산29 임 9,771 14	읍면 리동 지 변	中	(III)	(III)	不全		る市	
신곡 산11 임 30,056 652 7	신과		503	12	김천시 조마면 신곡동 533	박간현	산사태 복구	
조마 신곡 산41 임 30,056 652 증 조마 신곡 산254 구 7,820 120 조마 신곡 산184 임 121,079 91 조마 신곡 산185 임 232,617 116 조마 강곡 산113 임 12,219 64 조마 강곡 산29 임 9,771 14 조마 강곡 산29-1 임 7,043 5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527 동신그린빌라 나—502	박종국	5	
조마 신곡 산254 구 7,820 120 조마 신곡 산184 임 121,079 91 조마 신곡 산185 임 232,617 116 조마 강곡 산113 임 12,219 64 조마 강곡 산29 임 9,771 14 조마 강곡 산29-1 임 7,043 5	수		30,056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252-3	박철규	산사태 복구	
조마 신곡 산254 구 7,820 120 조마 신곡 산184 임 121,079 別 조마 신곡 산185 임 232,617 116 조마 강곡 산113 임 12,219 64 조마 강곡 산29 임 9,771 14 조마 강곡 산29-1 임 7,043 5					김천시 황금동 95—1 황금빌라트 102—102	计多计	-	
조마 신곡 산184 임 121,079 91 조마 신곡 산185 임 232,617 116 조마 강곡 산113 임 12,219 64 조마 강곡 산29 임 9,771 14 조마 강곡 산29-1 임 7,043 5	신과		7,820	120		(낚울판굴논) 논	산사태 복구	
조마 신곡 산185 임 232,617 116 조마 강곡 산113 임 12,219 64 조마 강곡 산29 임 9,771 14 조마 강곡 산29-1 임 7,043 5	신곡		121,079	91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419-142	건옥조	산사태 복구	
조마 강곡 산113 임 12,219 64 조마 강곡 산29 임 9,771 14 조마 강곡 산29-1 임 7,043 5	신곡		232,617	116		박인규	산사태 복구	
조마 강곡 산29 임 9,771 14 조마 강곡 산29-1 임 7,043 5	강곡		12,219	64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794	이재용	산사태 복구	대표 지번
조마 강곡 산29-1 임 7,043 5	24년		9,771	14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81-22	김사홍	산사태 복구	
ユ上\ズ101 <u>0</u> T0T	강고		7,043	ರ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동로 70, 101동 707호(구암동, 금빛타운)	김경조	산사태 복구	

1	귀		대표 기년			대표 기면					
		-태		-태-	-태		-태	-태 구	-테 구	草七	中七
상	多류	산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권 고	≤ o Io	(낚울판펔논) 논	이동해	곱니ㅇ	(낡울판펔논) 논	권택석	권택석	(낚울판펔논) 논	김순복	국(농림축산 식품부)	바호경
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45라길19, 301호(내발산동,원화이트캐슬)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월계1길 33-177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413-11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413-11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대방7길 9-15		전라북도익산시모현동17ド25-2 중앙하이츠아파트 5-806
지정면적	(m^2)	36	99	24	136	141	173	110	12	87	35
전체면적		1,873	1,193	1,774	715	48,276	775	9,558	1,226	12,067	23,901
7 1	수	七	전	口工	디	日	[O	7	전	7	디
	지 번	988-2	069	691	산212	산33-1	산33-2	A-1-220	162	2194	산133
재 지	의운	강곡	심화	신왕	신왕	대방	대방	대방	대방	대방	대방
全 7	음면	石圣	조마	圣叶	조마	조마	石子	조마	조마	조마	조마
	시군	김천	김천	김천	김천	김천	김천	김천	김천	김천	김천

177	수	제 지		7 1	전체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u>ቸ</u>	사업	1
	마음	되온	지 번	<u> </u>	(m^2)	(m²)	주소	≤ o Io	冷	귀
l			8		318,961	1,263				
							경북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474	장동식		
1.1	19	勢小	4F26	<u>2</u> n	10,534	12	경북 구미시 원평동 964-98	장원화	산지 사파	中 五
							경북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355	장상영	0	<u>-</u>
	101	황산	À <u>-</u> 27-5	<u>Б</u> П	37,908	114	경북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355	장상영	산지 사방	
	고아	整件	7-2	古	3,575	13	경북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559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유지 재단	산지 사방	
	707	성	산10	<u>2</u> p	46,719	43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323-6	석산김씨향산 석촌공파종중	산지 사방	대표 지번
	101	원호	산9-1	<u>Г</u> П	106,064	42	경북 구미시 원평동 375	장병진	산지 사방	
	101	원호	산75	+	7,176	418		국(농림축산 식품부)	산지 사방	
	도개	눈七	산91-3	[O	2,909	403	구미시 봉산면 신암동	최순향	산지 사방	대표 지번
	도개	난七	산90-1	[O]	104,076	218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24길 21-13, 202호(신평동, 아테네하우스)	신승화	산지 사방	
			Ī			1		Ī		Ì

2021. 5. 17.(월)

.1 1	1		대표 지번					대표 지번				대 지번
수업	종류		산지 사방	산지 사방	산지 사방	산지 사방		계류 보전	계류	보전	계류 보전	사방댐
	<u>ʻ</u> o lo		수 사 수	(낚울판굴논) 논	한국농어촌 공사	(낚울판굴논) 논		사혈규	以 为	<u>~</u> Fl	(낚울판굴논) 논	주식회사한국 태양광발전연 구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	子仝		경북 상주시 공성면 도곡리 152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062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06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5길 11,태양의집(성북동)
지정면적	(m^2)	1,949	28	458	95	1,368	1,128	23	7	15	429	361
전체면적	(m²)	101,656	25,736	847	591	74,482	564,989	357,340	843	2,271	7,350	130,052
7 1	<u> </u>		<u>Г</u> П	+	7	松		입아	머	전	전	ГDП
	지 번	4	신24-1	산70	350-1	656	8	산7-4	37	38	552-61	산152-2
재 지	되욷		나	다 나	눈五	나		사 역	중화	상	중화	한7
수	음면		₹% 1%	왕	양생	주 수		대가야	대가야	대가야	대가야	상림
	시군	상주계	상구	상주	상주	상주	고령계	디	고령	고명	원건	고령

	미고							대표 지번								
2	수 성급 교	₩ ₩		사방댐		사방댐	사방댐	산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水 品。			최수혁		박정옥	국(농림축산 식품부)	이재원	권순한	류재홍	류재현	류태현	박외생	류경옥	류병선	류종옥
소유자 또는 정유자		不全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64-9, 103동 710호	(이포덕일한마음아파트)	409~4 중정동 409~4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82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491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491	1-7 1/1동용고 구부 구h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9 한양가람아파트 408동 403호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491	정남 목포시 호남동 1 <i>-776</i>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491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491
기간대건	스송면속	(III)	1	55	34	7	009	က				433				
	선제 (m ³)	(III)	84	1,017	912	704	6,155	21,231				2,776				
	지목		O D	力ュ	力皿	力ュ	士	On The	ত চ							
		고				산24-1										
マ マ	1	유	학산	화산	화산	학산	학산	기성	₹ 							
석		유면	가산	가산	가산	가산	가산	땅				图				
	1	시군	칠고	실구	설 구	설구	살고	실고				K Tr				

	H 구	1											
	수업	종류				,	상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산사태 복구
	田 で	Ö. Ö.	류종선	류재희	김상호	김경태	김경화	김두드	김영택	김영제	(주)봉구개발	(주)봉구개발	국(농림축산 식품부)
2071年1207	소유사 또는 섬유사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491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415	대구 달서구 감삼동 553 청구타운 101-111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613 신세계타운8-603	대구 북구 읍내동 770-4 혜원빌라 비동 502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293-1	대구 수성구 상동 171 정화빌라 102-201	대구시 달서구 선원로 122, 106동 306호(이곡동, 성서2차서한타운)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1길 5-1(입석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1길 5-1(입석동)	
	지정면적	(m^2)					367			58	308	56	6
	전체면적	(m²)					5,094			813	3,203	318	42,806
	기도	77			2 D					По	면	[D	7
		지 번					신-25-1			산25-9	산25-5	171-9	1092
	▼	리동				<u>Z</u>					기생	7&	7%
	સ લ [읍면					땅			완원	원울	部外	완
		시군					<u> 본</u> 다			수	스트	전 다	는 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156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 니다.

2021. 5. 17.

경상북도지사

10000					2021, 0, 11,
기간	변경		(영구) 1 1 1 1 1 1 1 1 1 1	67. (일시) 허가일로부터 ~ 2023.12.31	
점용기간	당초		丏	6T, (일시) 허가일로부터 ~ 2022.6.12	
용 자	성명		구미시장	(건설수변 과장)	
점용	주소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اب (٥	부	구미시 고아음 원호리 486-2번지 일원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91-65번지 일원	구미시 고아음 원호리 491-65번지 일원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91-65번지 일원
선용면적	변경	〈인노제2교〉 L=20.9m, B=18.0m 영구 406㎡ 일시 291㎡	변경없음	(인노제4교〉 L=21.9m, B=16.0m 영구 365㎡ 일시 603㎡	변경없음
사업개요 및	당초	(인노제2교〉 L=20.9m, B=7.5m 영구 166㎡ 일시 197㎡	(인노제3교〉 L=22.2m, B=2.5m 영구 56㎡ 일시 272㎡	(인노제4교〉 L=21.6m, B=9.0m 영구 216㎡ 일시 662㎡	〈인노제5교〉 L=20.4m, B=13.0m 영구 266㎡ 일시 622㎡
점용	무적		i.	를 살 & <u>스</u>	
고	상		· 完	하천 (인노천)	

 -1	E 3			(영구) 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워가일로부터 ~ 2023.12.31		
점용기간	상			(영구) (영구) 청가일로부터 청가일로부터	영구, 영구, (일시) (일시) 허가일로부터 허가일로부터 ~ ~ 2022.6.12 2023.12.31		
	왕			구미시작	(건설수변 과장)		
A 용	수수			구미시	송 생대로 55(송정동)		
0 7	₹ F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91-65번지 일원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91-47번지 일원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91-65번지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404-3번지 일원		
점용면적	턘경	(인노제6교〉 L=20.9m, B=21.0m 영구 435㎡ 일시 556㎡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사업개요 및	水水	(인노제6교) L=20.8m, B=21.0m 영구 230㎡ 일시 440㎡	(인노제8교) L=16.5m, B=10.5m 영구 184㎡ 일시 522㎡	(인노제1취수보〉 L=20.6m, H=1.34m 영구 646m²	(인노제2낙치공) L=26.5m, H=2.4m 영구 855㎡ 일시 930㎡		
점용	파				퍼 <u>설</u>		
차찬료	ीर्य व			大 中	하찬 (인노천)		

 0000			0	0	_	 		2021	<u>. </u>	Δ,	(=
점용기간	변경										
삼	日本										
점용자	성명										
~ 문	주 소										
0	귀 시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91-65번지									
점용면적	변경	변경없음									
사업개요 및	당초	(인노제3낙치공) L=9.0m, H=0.62m 영구 188㎡ 영구 28㎡									
삼왕	무정										
	아 소 소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157호

도무형문화재 인정 고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른 도지정 무형 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동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보에 고시 하고자 합니다.

2021, 5, 17,

경상북도지사

○ 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지정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대상자	생년	성별	주소
도 무형문화재	제4호	청도차산농악	김제태	1960년생	남	청도군 청도읍
전수교육 조교	제13호	안동놋다리밟기	김단영	1970년생	여	안동시 전거리3길

경상북도 고시 제2021-15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같은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 도면의 고시 등)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7일

경상북도지사

1. 지형도면 등 작성 사유

- 현 도로여건 등을 반영하여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함 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연장 (km)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 비고
현구역	지방도	909호선	시점: 청통면 보성리 171-1 종점: 청통면 보성리 786-5	0.3	었으	현 - 그 성기	
변경 구역	지방도		시점: 청통면 보성리 171-1 종점: 청통면 보성리 786-5	0.3	없음	도로여건 반영	

3. 접도구역의 지정 조서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909호선	노선명	대평-치일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구간 및 범위	기점 : 청통	등면 보성리 1	71-1 종점	: 청통면 보	성리 786-5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	스에 대한 훼손	손 방지 및 ㅁ 위험방지	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조서

-		3	규모			VJ 2J			21.0	7.0	-al -a	
구분	ᆙᇬᅼᇳ	ᄬᆙ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소 로	က	지 909	6~20	보조 간선 도로	9,307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일반 도로	I	경고 제2010-283호 (2010.6.24)	

-		3	규모			A1-71			21 O	7.0		
구분	ᆙᇬᄀᅼᄪ	ᄬᆙ	뛴 여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변 경	소로	ಌ	지 909	6~20	보조 간선 도로	9,307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일반 도로	-	경고 제2010-283호 (2010.6.24)	선형 변경

5. 도로구역 결정과 접도구역 지정 및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 (도면게재 생략)

※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공람장소 :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경상북도 고시 제 2021 - 159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5 월 17일

경상북도지사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 · 안전조치에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시장 사파	관한 사항	미산
의성소방서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관리주체 관리	

경상북도 고시 제2021-160호

20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기타물건(기계장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경상북도지사

1. 건 명 : 202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변경내역 :

7 H	여배	제작사	기즈머	청시	기준가격 (단	· 간위 : 천원)
구 분	연번	세작사	기종명	형식	변경전	변경후
기계장비	91	일본차량	DHP85-2	_	2,800,000	570,000

3. 기타문의 :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전화 : 054-880-2226)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일(2021.1.1.)이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적용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 - 1087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전자 공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경상북도지사

□ 등록공인(전자공인)

연번	공 인 명	인 영	최초사용 년 월 일	등록사유
1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인	3,6cm정방형	2021.5.17.	감사관-7969 (2021.05.11.)

경상북도 공고 제2021- 1091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경상북도지사

상 호 (대표자)	업 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일
주식회사 태경엔지니어링 (최종열)	일반측량 (438-81-02503)	04-004912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호월2길 45	2021.05.13.

경상북도 공고 제2021-1097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경상북도지사

1. 공고기간 : 2021. 5. 17. ~ 2021. 5. 31.(15일간)

2. 공고내용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처분업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내용
주식회사 금강종합건설 (황연호)	건축공사업 (16-0695)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서로 81, 2층(형곡동)	영업정지(2개월) (2021. 06. 01.~2021. 07. 31.)

나.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 불

이행

다.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라. 처분일자 : 2021, 5, 10,

3. 안내사항

- 가. 귀 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리니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 첩을 영업정지 전일까지 경북도청(도시계획과)으로 제출하여 처분사실을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처분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통지하여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규정에 위반(건설공사 신규계약 등)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 법 제8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다.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처분의 원인이 된 2020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를 경북도 청(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아울러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청 도시계획과(054-880-3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1- 1098호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경상북도지사

1. 공고기간 : 2021. 5. 17. ~ 2021. 5. 31.(15일간)

2. 공고내용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상 호	처분업종	소 재 지	처분내용
(대표자)	(등록번호)		(말소일)
(주)환영 종합건설 (강남수)	토목건축공사업 (2325)	경상북도 안동시 복주6길 24, 3층 301호(옥동, 옥송딜라이트)	등록말소 (2021.06.01.)

나. 처분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 완하지 아니한 경우

다.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라. 처분일자 : 2021, 5, 10,

3. 안내사항

- 가. 귀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리니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등록말소 전일까지 경북도청(도시계획과)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처분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외 본 처분 이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신규계약 체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아울러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청 도시계획과(054-880-391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1 -1103호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고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주요내용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경상북도지사

1. 특구계획 개요

○ 특구명 :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 사업개요

- 위 치 : 김천시 일원

- 예정면적 : 73.76km²

- 지정기간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 주요내용

-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사업
-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사업

2. 특구지정 필요성

- 비대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 확산과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도심 내 생활물류거점을 기반으로 물류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소상공인 의 판로 확대와 체계적인 배송체계 구축
- 또한 친환경 배송수단을 근거리 배송에 도입해 도시물류 배송시스템의 획기 적인 개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함

3. 특구지정 기대효과

- 물류 신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신규 일감 창출
- 온라인 시장 판로확대에 따른 매출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부품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 연계 통한 지역 내 파급효과
- 국가물류 및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 등과 연계한 후속정책 확보

4. 특구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 : 경상북도지사
-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법」 제74조 제1항 4호에 따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 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경북 스마트 그

린물류 관련 기업 및 기관*

* 열람기간 중 확인 가능

5. 특구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방법

-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추진
-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재원조달 방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임
 - * 투자규모 및 재정조달방법은 추후 변경

6.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 기재 생략(필요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1. 5. 23.(일) ~ 2021. 6. 17.(목) 18:00까지

(09:00 ~ 18: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 산업기반과

202호(전화: 054-880-2476)

8.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5. 23.(일) ~ 2021. 6. 17.(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E-mail)로 의견 제출가능

- 주 소:(38542)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 산업기반과
- 이메일: startacr2@korea.kr
-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4차 산업기반과(☎054-880-24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전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의견서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제 출 자	주소		전화번호
제출 의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후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시 군

고 시

김천시고시 제2021 - 57호

김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1. 5. 17.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 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 성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7		규 모				લ્વે જો			21. Q	주요	최초	
구분	ᆙᇬᅼᄪ	류 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구표 경과지	최조 결정일	비고
기정	대 명	2	아포1	17~ 30	보조 간선 도로	4,032	중로1- 아포1	아포읍 송천리 1110-7	일반 도로		경고 제93-224호 ('93.6.19)	
변 경	대 로	2	아포1	17~ 30	보조 간선 도로	4,032	중로1- 아포1	아포읍 송천리 1110-7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아포1	대로2-아포1	、일부구간 선형변경 B = 17~30m L = 4,032m	· 지적 불일치에 따른 선형 변경

3. 김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4. 이해관계인은 김천시 건설도시과(☎ 054-420-642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

김천시고시 제2021 - 58호

김천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김천시고시제2019-92(2019.11.21.)호, 제2020-118(2020.10.19.)호, 제2020-139(2020.12.21.)호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17.

김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김천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나. 명 칭 : 포도C.C 골프장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전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774,060㎡(대중제 27홀)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면적 : 750,955m²
 - ※ 개발행위허가 면적(신규) : 23,105m²[코스증설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다옴 대표 이세홍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B동 1515호(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5. 사업기간 : 2019.11.5. ~ 2021.12.31.

6. 변경사유 : 골프코스 증설(당초 24홀 변경 27홀)에 따른 코스 추가 등 설계변경 등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명세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등 : 붙임조서 와 같음

-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9. 기타사항은 김천시청 건설도시과(☎ 054-420-6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토지조서

삐

,	교					
ত শ্ব	닏꾠	多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7.44	<u></u>				
소 1	×	수 수 수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변경	子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7	당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拉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부(m²)	면 적(m²) 		595	612	022	2,132
臣名	기보파지	하 구면식	595	612	022	2,132
	파		다	古	Го	立工
	기번		562	563	578-	578-
	한		송국리	송국리	송죽리 1	송국리 578-
7	구		П	2	3	4

	7	귀 .							
ত্ব দ	-	권리	종류						
HH TH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S)						
수	<u>취</u>	수 수 성명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全条本		변경	子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1		당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立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적(m²)		편이면건	컨테디어	254	836	1,250	40	684	50
中		구브대전	6 ㅜ 건식	254	836	1,250	40	684	50
		마		[O]	口ュ	첫	버	立ュ	버
	지번			578– 4	279	580-	580-	581	582-
	한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자리
	라			ıΩ	9	7	∞	0	10

	7	디							
ত্ব	네	권리	各류						
문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50 Jo						
수	된	×	हरू इ.स.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지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지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수 유자	- 11 - 1	변경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당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立。	수소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전 (m²)	/	स्राम्य	찬입단수	496	92	1,640	337	569	2,919
西		7 H H Z	승 구면의	496	92	1,640	337	569	2,919
	ҡ	매		立ュ	· 松	立ュ	버	立ュ	力皿
	지번			582-	582-	583-	583-	584-	584-
	는 전			송국리	승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수 사 건
	计			11	12	13	14	15	16

	비고							
ল জ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 જ						
수바바	×	는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u> </u>	世 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4	'K1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4(m²)	편이편건	컨됩면식	526	1,831	1,078	1,336	23	311
田	1 H H Z	하구면의	526	1,831	1,078	1,336	23	311
	매		잣	^[D]	젓	전	<u>7</u> □	স্থ
	거년		585	586-	586-	586-	586-	586-
	산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뀨		17	18	19	20	21	22

1	교							
외의 제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50 10						
소 년 년	×	で マ エ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多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4 4	샹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4	수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혜란로 129				
적(m²)	Έ년년	편집면식	2,714	169	3,088	08	155	426
면정	간면면	ㅎ ㅜ번의	2,714	169	3,088	30	155	426
	매		口工	포	口里	口工	祵	力皿
기번			587– 1	587-	588	589-	589-	589-
아 文			송주리	송죽리	송국리	송죽리	송주리	송주리
小			23	24	25	26	27	28

						Г			
	7	건뉴							
ত্ব	- -	사 유 유 유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という	જ જ						
수	수 수 생명		स ⊢						
		TO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7	소유자	电多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ব ব	ŁŻ.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추	수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	적(m²)	떨어퍼덕	컨됩면수	198	112	2,426	873	1,996	1,654
7	强	ᄁᄇᆑᅺ	ㅎ ㅜ면씩	198	112	2,426	873	1,996	1,654
		매		式 ^田	급	古	立ュ	口工	口工
	기번			590	591	592	593	594	594– 1
	아 汉			송국리	송죽리	송죽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u>구</u>			29	30	31	32	33	34

,	교							
ল ল	권리	多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50 10						
全品品	- Halbarren - Hal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场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 4	水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양초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혜란로 129				
적(때)	편이대건	편집면식	2,836	1,428	463	4,205	664	2,800
留	1 1 1	ㅎ ㅜ면역	2,836	1,428	463	4,205	664	2,800
	매		古	拉	拉	젓	口工	전
3	지번		595	596	597	598	599	009
	유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수 구구
	计		35	36	37	38	39	40

	미끄							
ল ল	권리	る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0 -						
수사	~ N	전 상 상 (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场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상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立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적(m²)	1 1 1	쒄욉면석	486	645	324	288	86	298
田	7 1 1	승두번 역	486	645	324	288	93	298
7	마		첫	古	元五	전	古	五
	지번		601– 1	601–	602-	602-	602-	603
	한		송국리	송국리	송죽리	송국리	송국리	송자리
	中		41	42	43	44	45	46

						T		
,	디메							
ত্ব ক্ল	사라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 જ						
수 양 원	×	는 소 구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多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水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샹	수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사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적(m²)	편이편건	편집면식	645	965	218	09	129	022
旧为	7 17	승 구면의	645	965	218	09	129	770
	매		口口	젓	젓	否	젓	力型
,	지번		604-	604– 2	604-	604-	604-	605-
	현		송죽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죽리	수 수 구구
	라		47	48	49	50	51	52

	- 1				_			
	디미							
이 이 등	권리	る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50 ₹0						
수 유 H								
		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场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	水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상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적(m³)	편이판건	컨입면식	721	499	862	1,180	407	854
型水	7 1	승 두번역	721	499	962	1,180	407	854
	声		口工	<u>7</u> 0	元五	五	전	전
	지면		605-	605-	605-	909	209	608-
	한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수 수 구구
	구		53	54	55	56	57	58

,	디미							
이 등 기 등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50 Io						
수유	주 소 성명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多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1	당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拉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적(때)	떠인되	편집단식	348	469	66	743	988	473
旧名	7 H H Z	승 구면의	348	469	66	743	336	473
	매		一一一一	· 전	古	소	古	古
,	기번		608-	608–	608-	608-	9	-809
	한		송국리	송국리	송주리	송국리	송국리	송주리
-	计		59	09	61	62	63	64

		- 1							
	7	건뉴							
0 0	ग भ च्च	권리	종류						
ਨ ਸ	소뉴된 이외의 권리명세	という	જ જ						
\ \ \ \	수 구 년	주 소 성명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4	Ϋ́.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추	수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적(m²)	건민	컨됩면식	123	242	12	1,149	1,200	570
	면	ᄁᄇᆑᅺ	하구면식	123	242	12	1,149	1,200	570
	K			전	전	첫	젓	젓	五
	7	기년		808–	608-	608-	608- 11	608– 12	608- 13
	<u>하</u>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计			65	99	29	89	69	70

	비고							
ত্ৰ হ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2 7	₹0 -10						
수 아 가	1	수 수 등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지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지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u> </u>	世 日 日 日 日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d	好	성 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立。	子仝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적(m²)	֓֞֞֞֓֓֓֓֓֓֓֓֓֓֓֓֓֓֓֓֓֓֓֓֓֓֓֓֓֓֓֡֓֓֓֓֡֓	편입면석	908	283	375	626	595	253
日	î î 1	충부면역	306	283	375	626	595	253
7	<u> </u>		世	古	古	古	古	五
	기번		609-	609-	8 -609	609-	609-	9
	호		승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수 수 구 구 근
	计		71	72	73	74	75	76

	7	기							
চ্চ	ধা	권리	종류						
면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જ						
수	원	주 소 성명							
		ক্ত	성 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수 승규	-النال-	电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1	당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分 分	수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전(m²)	i (mr)	ZH이판	컨됩면식	320	29	424	404	81	750
田		ᄁᄇᆑᅺ	하구면식	320	59	424	404	81	750
		매		古	古	古	世	世	五
	<u> </u>	지면		L -609	8	6 -609	609-	609-	610-
	아 K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차리
	計十			22	78	62	80	81	82

1	디미							
ত্ব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50 To						
수원	주 소 성명							
	ES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多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4	121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작심	수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사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적(m²)	굲뛴인판	편집면식	893	909	1,964	182	1,101	483
면 3	1 1 1 1 1 1 1	ㅎ ㅜ면의	893	506	1,964	182	1,101	483
	매		古	古	古	古	古	五
-	기번		610– 2	611- 1	611-2	611-3	611-4	612
	한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자리
7	구		83	84	85	86	87	88

	7	기							
লু ,	iii	권리	종류						
H 이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0 0						
숙	면	수 소 성명							
		ES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1.11.	电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4	,	好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u> </u>	수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적(m)	/mr/L	स्वाम्य	컨됩면식	701	1,722	9,246	23,094	2,129	62,244
哲		규보대전	ㅎ ㅜ면역	701	1,722	9,246	23,094	2,129	62,244
		매		전	전	O	0	첫	첫
	기판			613	614	615	616	617	618
	년 호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자리
	라			89	06	91	85	93	94

						Г			
	7	건뉴							
ত্ব		권리	종류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જ જ						
수	면	주소 성명							
		TO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수 승규	-١٣٠٦	电多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 -	rl i	ŁŻ.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당초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혜란로 129				
절(m²)	i (III.)	건민	컨됩면식	152	2	265	234	1,285	1,921
田	건	규버대건	하 구면식	152	2	265	234	1,285	1,921
	K			炎	젓	전	元正	元	松
	7	<u> </u>		619– 3	762–	764-	764-	765– 3	766-
	한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计			92	96	97	98	66	100

	1 ?	거							
ত্ৰ গ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7	<u>5</u> 0						
숙	ᆔ	수 소 성명							
		ार्°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	电多	子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K4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号之	수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절(m)	ì	स्वाम्य	찬입단수	846	1,451	4,879	942	1,313	301
古	١	7 11 17 2	승규 번역	846	1,451	4,879	942	1,313	301
	K	매		· 本	<u>\text{\tin}}\text{\ti}\}\\ \text{\tin}\}\\ \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i}\text{\text{\texi}\text{\text{\texi}\text{\text{\texi}\text{\texit{\text{\texi}\tint{\texi}\text{\tex{\texi}}\tint{\tintet{\text{\texi}\text{\texit{\texi}\text{</u>	立ュ	· 松	立ュ	立皿
	기번			766–	766–	766– 8	766–	-99 <i>L</i>	-99 <i>T</i>
	아 K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죽리	송 주리
	计			101	102	103	104	105	106

	미기							
ত্ৰ দ	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세		<u>た</u> の 品						
수	, L	주소 성명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路	子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4	יאל	상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상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적(때)	, , , ,	편입면적	277	225	237	167	937	1,527
田		공부면적	377	225	237	167	937	1,527
,	스 마		· 松	<u>\text{\tin}}\text{\ti}\}\\ \text{\ti}}}\\ \text{\tex{\text{\text{\text{\text{\texi}\text{\text{\texi}\text{\text{\text{\texi}\text{\text{\texi}\text{\text{\text{\texi}\text{\text{\texi}\text{\texi}\text{\text{\texi}\text{\text{\text{\text{</u>	. 太	<u>₹</u>	첫	え
	기년		769– 1	769–	770-	770-	771-	772-
	년 고		승국리	송죽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주리
	구		107	108	109	110	111	112

,	미그							
ত দ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0 P0						
수 야 _원	수 소 성명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 4	184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상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m)	E 0 E	컨겁단수	648	1,461	2,407	479	98	2,043
<u>되</u> 조	7 1	ㅎ 구면의	648	1,461	2,407	479	98	2,043
	마		炎	첫	첫	※	₩	幺
	지표		773–	774-	774-	774-	774-	775
	연		송국리	송죽리	송죽리	송죽리	송죽리	송국리
	十 中		113	114	115	116	117	118

	미끄							
ল ল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o }o						
수사	수 사용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场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상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心	一个个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적(m²)	1. 1.	쒄욉면석	698	443	1,993	466	169	3,005
田	7 1 1	승두번 역	698	443	1,993	466	169	3,005
7	현		첫	쩟	立ュ	<u></u>	<u></u>	立ュ
	기번		922	777-	777-	777-	777-	778
	후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주리	수 사 끄
	라		119	120	121	122	123	124

	7	건뉴							
0 0	T T ==	권리	종류						
수오권 이익이	ㅠ면 이 권리명세	건대	જ જ						
⟨ ⟨	는 년	주 소 성명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多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4	ŁŻ.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추	수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적(m²)	건민	컨됩면식	1,588	645	1,050	133	1,466	89
	旧分	가보대건	ㅎ ㅜ면역	1,588	645	1,050	133	1,466	88
	ĸ			口口	첫	立ュ	口ュ	口皿	<u>**</u>
	7	<u> </u>		779–	082	819-	821-4	822-	822-
	<u>한</u>			송국리	승국리	송국리	송죽리	송죽리	송국리
	라			125	126	127	128	129	130

,	비고										
ত্ৰ ক্ল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50 Io									
수	주소 성명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多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4	당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혜란로 129			
{m²)	편이대건	편집면식	83	107	3,997	932	1,061	652			
면적	1 1 1	ㅎ ㅜ번의	83	107	3,997	932	1,061	652			
	매		屋	口工	쩟	天	전	力皿			
3	기번		822-4	822-	823-	823-	823-	863– 71			
	한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u> </u>			
7	子子		131	132	133	134	135	136			

	旧기							
ত্ব হ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 એ						
수 사 관	~	수 소 상명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그울다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u> </u>	电场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	水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구울무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5.42 1.42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적(m²)	편이판건	편집면적	89	1,194	76	028	1,727	3,051
日	7 F	승두번역	682	1,194	92	870	1,727	3,051
7			口口	버	正位	口口	口工	力型
	지판		863– 72	863-	863-	9 <i>L</i> -898	LL -898	863-
	유기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수 샤 끄
	计		137	138	139	140	141	142

제	6536호
---	-------

							<u> </u>	
,	미기							
ত্ৰ হ	권리	종류						
유권 이오 권리명세	7	50 [0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는 소 소 구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多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4	岺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양초	수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적(m²)	편이편집	컨됩면식	1,453	1,603	651	671	2,724	1,948
旧る	공부면적 및		1,453	1,603	651	671	2,724	1,948
K			口口	口口	口工	口里	口里	口口
,	지면		863-	863-	863–	863-	863-	863-
	위치		송국리	송국리	송주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子		143	144	145	146	147	148

,	디미								
이 이 등	권리	る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u>5</u> 0							
수 	×	는 소 소 나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구울근	금통구	근올믄
소유자	电3	不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4	松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그르그	그는	무을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혜란로 129			
적(m²)	표이표 기	컨입면식	380	489	1,453	220,704	474	450	555
即	₹ र		380	489	1,453	220,704	474	450	555
K	매		Ϋ́π	以日	口工	쩟	☆□	☆□	Υπ
,	기번		863-	863– 26	863– 35	863-	863-	863-	863– 86
3	유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승국리	승국리	수 차
	라		149	150	151	152	153	154	155

Г		- 1					ı	ı			
	7	건뉴									
	외의 레	권리	종류								
	유권 이외 권리명세	五	(O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수 수 성명									
			성명	기획재정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u> </u>	电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٠	서	성명	국(기획재정 부)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당초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혜란로 129
	적(m²)	전이버적	한민단교	3,084	192	2,678	238	109	287	327	2,777
	면정	고비대적	6ㅜ건식	3,084	192	2,678	238	109	287	327	2,777
ļ	K	매		漸	체	率	承	率	체	承	Öμ
	지판			876	877	878	879	880	885- 4	885-	산14 4
		사		송죽리	수죽리	수주리	송죽리	송죽리	수죽리	송죽리	수 서 고
	구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	교									
,	외의 제	권리	종류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7	0 0								
	소 유. 권	주 소 성명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多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당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4	수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적(때)	전비(연	선임단상	4,760	11,107	3,967	11,901	11,504	1,587		
	면 성	공부면적		4,760	11,107	3,967	11,901	11,504	1,587		
		매		O	디	[D	O D	디	<u>2</u> n		
	지번			산14 5	산14 6	산14 7	산14 8	산14 9	산15 0		
		하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국리	송주리		
	7	十		164	165	166	167	168	169		

Г		- 1						ı		
	-	디뮈								
	ত্ব দ	권리	종류							
	유권 이오 권리명세	7	0 0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聚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유자	电多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4 1	상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국(기획재정 부)	국(기획재정 부)	국(기획재정 부)
			\$\frac{1}{2}\$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적(m²)	돈뛰이판	컨됩면식	44,419	3,166	3,710	514	218	235	120
	면정	공부면적		44,430	3,174	3,809	533	257	955	267
	K	메		0	[O]	[O]	[D]	<u>Г</u> П	ГП П	무
	5	지번		산151	산15 2	산15 3-1	산15 3-2	산H5 3-4	산H5 3-5	산15 3-6
	환			송국리	수주리	송국리	승주리	송죽리	수죽리	송국리
	구			170	171	172	173	174	175	176

ļ	기							
외의 제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FI T	50 Io						
소 H H	주 소 성명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1	당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台	수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적(m²)	파이파격	편집면식	2,348	626	3,020	5,346	14,716	1,124
旧	공부면적 1		2,348	959	3,020	5,346	14,716	1,124
	매		漸	漸	첫	첫	첫	첫
지면			산19 7	산19 9	917– 91	783-	783– 87	783-
유			송자리	송죽리	[음윤	무율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근율의
計十			177	178	179	180	181	182

	7	디							
ত্ব ,	<u>~</u>	권리	多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Ŧ	50 10						
수 야.	Ή	-주소 성명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u>수</u> 유자	-	변경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 -1		당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立	수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사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작(m²)	(स्राम्य	편집면식	682	8,104	3,256	883	2,502	780
古		공부면적		789	8,104	3,256	883	2,502	780
	~	매		· 松	宏	立ュ	立ュ	立ュ	力型
	기번			783–	783-	784-	784-	785-	785–
	유			무율무	규용리	규용리	다용되	규용되	무율다
	计			183	184	185	186	187	188

	. 1					Г	T	
	미끄							
্ ত্র স	원리	る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0 -						
수사	~ N	수 소 성명						
		왕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场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4	,k4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42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적(때)	1. J.	풘욉번석	1,236	1,537	727	2,078	2,829	747
떕	공부면적 1		1,236	1,537	727	2,078	2,829	747
7	는 마		口皿	口工	口工	口工	口工	力工
	거변		982	787– 1	787–	788-	788-	788-
	위치		면육무	무율무	무율무	규율리	규율리	면
	구		189	190	191	192	193	194

						T		
	디미							
। ল ল	취리	る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u>5</u> 0						
수사	~	8 장 산 나						
		성 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u> </u>	电场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 4	松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松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해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적(m²)	편이판건	편집면적	694	1,521	969	768	1,031	1,448
田	상부면적 1		694	1,521	695	892	1,031	1,448
	매		口口	口口	元	口工	口工	전
	기번		788– 4	788-	-88 <i>7</i>	788-	789-	789–
	유		근윤드	무율무	무율무	규율리	규율리	무역되
	구		195	196	197	198	199	200

						T		<u> </u>
	디미							
্ ত্ ভ	원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S •						
수사	~	수 소 38명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u> </u>	电场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 4	松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5字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적(m²)	편이편기	번입번역	526	19,461	2,787	3,306	1,385	1,279
日	7 F	숭두번역	526	19,461	2,787	3,306	1,385	1,279
7			첫	口工	첫	元五	口工	立工
	기번		790	791– 1	791–	791–	791-	791– 5
	유		그용디	근윤의	규율리	규율리	규율리	무율무
	라		201	202	203	204	205	206

,	미기							
ল ল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u>5</u> 0						
수 야 바	×	ह _ू इ.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지산신탁
소유자	电多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	당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拉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적(m²)	교이파기	편집면식	1,015	263	816	10	645	5,762
田名	1 1 1 1 1 1	승 구면의	1,015	592	816	10	645	5,762
K	매		口口	元二	口口	口里	口工	立ュ
	스 년		791– 6	791– 7	791– 8	791– 9	792	793
	하		면율근	면율무	면율무	규율리	면율무	무용다
?	라		207	208	209	210	211	212

						T		
	旧기							
ত্ব 😓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u>5</u> 0						
수사	~	~ 소 수						
		왕 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유자	电场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u> </u>	水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129				
적(m²)	표이타고	컨입면식	2,192	991	1,574	4,460	2,102	6,546
日	7 F	승두번역	2,192	991	1,574	4,460	2,102	6,546
	매		丘	口口	口工	첫	전	松
	지판		794- 1	794– 2	794– 3	795	796-	796-
	위치		근원무	다용다	무용무	규율리	규용리	무 유 무
	라		213	214	215	216	217	218

_									
] 7	건뉴							
7	이 어 등	권리	종류						
7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THE TR	50 [0						
,	수 유 H	۲ ۲	五 元 元 二 二						
			워 용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경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127
	4	Ϋ́.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당초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적(때)	파이파격	컨됩면수	737	2,739	899	559	99	258
	日	가보대건	하 구면역	737	2,739	899	559	99	258
		매		炎	炎	전	幺	炎	※
	7	<u> </u>		796–	-96L	796-	9 -962	797— 1	797–
		사		무율무	무율무	무율무	다였다	무율무	다 왕 다
	1	+		219	220	221	222	223	224

,	미기							
ত্ৰ হ	권리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50 10						
수 유 바	N N	는 소 <mark>~ ~ 구</mark>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u> </u>	世 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혜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4	水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당초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태혜란로 129
적(때)	표이파고	편집단의	332	108	21,622	2,871	3,570	9,785
旧为	1 1 1	ㅎ 구면의	332	108	21,622	2,871	3,570	9,785
	매		짯	쩟	짯	쩟	<u>5</u> 1	ГП
	거변		-197 -5	805	1065	1066 -12	샾	산
	유지		무율무	무용무	면율끈	규율리	규율리	는 무역 무역
	라		225	226	227	228	229	230

	1 ?	면							
7 7	ত্ব হ	권리	多류						
7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50 [0						
ŕ	수유.	×	五 元 元 二 二						
			성 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기획재정부
	소유자	用る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У	당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구 (기획재정부)
		40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적(때)	स्राम्य	컨됩면식	16,529	11,223	3,570	647	346	33
	면	기보다	하 구면역	16,529	16,529	6,895	1,586	529	1,223
		매		10 10	<u>Ф</u> П	<u>5</u> p	<u>2</u> 1	<u>7</u> 0	©□
	7	스탠		산2- 1	사원	사3-	산3-	산3-	산3- 9
		장		무율무	그용리	그용리	규용되	무율무	그용디
	1	+		231	232	233	234	235	236

7	교					
		冬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A.T.	<u></u>				
수	۲ ۲	<u> </u>				
		성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기획재정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자	电경	子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 4	당초	성명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국 (기획재정부)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合位	수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적(m²)	ल्लामय	컨입단의	73	194	430	750,955
면정	가비대전	승 구면의	108	487	430	763,269
	머		<u>Б</u> П	<u>2</u> n	泽	
7	지판		신5— 1	신5- 4	산10 8	239필지
7	한		무율무	근용되	무율무	236
1	<u>누</u> 마		237	238	239	계

구미시 고시 제2021- 89호

구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사곡동 88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구 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용도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Ţ	면 적 (m²)	비고
十 元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31	사곡동 주거단지	사 곡동 603-12 일원	215,741	_	215,741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조서

-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1)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그님		면적(m²)		그 서비(~)	нlэ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72,790	_	72,790	33.7	
제2종일반주거지역	142,951	-	142,951	66.3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 (가) 도로 총괄표

		합	례	1류				2투	F	3류			
류별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31	4,324	54,204.2	6	849	11,088.5	12	2,426	35,091.0	13	1,049	8,024.7	
대로	2	1,368	23,328.3	_	_	_	2	1,368	23,328.3	_	_	_	

		합	곅	1류				2투	ř		3류			
류별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중로	9	1,102	16,564.0	2	215	4,412.3	3	418	6,496.5	4	469	5,655.2		
소로	20	1,854	14,311.9	4	634	6,676.2	7	640	5,266.2	9	580	2,369.5		

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및 면적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	규류	모 번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u> </u>	급	별	호	(m)		(111)			0 11	0-1-1	E 0 E	
합	- 계 31개 노선		-선	_	_	_	-	-	ı	-		
기 정	대 맫	2	1	30~ 33	주간선 도 로	2,360 (264)	광로 2-3 형곡 862	대로 1–1 광평 산29–6	일반 도로	I	건고제21호 (1970.5.12)	() 지 구 내
기정	뀨 ル	2	5	30~ 33	주간선 도 로	2,866 (275)	대로1–1 오태신89– 9	대로2–1 상모산11– 4	일반 도로	l	경고제305호 (1991.8.12)	() 지 구 내
기 정	중 로	1	134	20	집 산 도 로	171	대로 2-5 사곡 417	사곡 412	일반 도로	I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중 로	1	135	20	집 산 도 로	44	사곡 387	대로 2-1 사곡 388	일반 도로	Ι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중 로	2	123	15	집 산 도 로	132	대로 2-1 사곡 393-1	사곡 산18-1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구		규	모			연장			사 요	주 요	최 초	비
! 분	능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능	(m)	기 점	종 점		경과지	결정일	고
기 정	중 로	2	199	15	집 산 도 로	261	중로1-134 사곡 603-67	중로1-135 사곡 387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중 로	2	200	15	집 산 도 로	25	소로1-112 사곡 산22-1	중로1-134 사곡 산22-1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 _. 11 _. 9.)	
기 정	중 로	3	150	12	집 산 도 로	300	대로2-1 사곡 399	중로2-123 사곡393- 2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4-70호 (2014.5.29.)	
기 정	중 로	3	208	12	집 산 도 로	103	중로1-135 사곡 389	중로2-123 사곡 387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중 로	3	209	12	집 산 도 로	36	소로1-112 사곡 414	중로1-134 사곡 415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중 로	3	210	12	집 산 도 로	30	중로 1-134 사곡 603-69	소로1-113 사곡 603-61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1	112	10	국 지 도 로	253	사곡 422-11	중로2-200 사곡 산22-1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1	113	10	국 지 도 로	210	중로2-199 사곡 603-12	소로1-115 사곡 603-3	일반 도로	-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1	114	10	국 지 도 로	31	소로1-113 사곡 603-26	소로2-435 사곡 603-13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규	卫		기능	연장 (m)	기 점		v1 ^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1
구 분	등 급	류별	번 호	폭원 (m)				종 점				비 고
기 정	소 로	1	115	10	국 지 도 로	140	중로2-199 사곡 603-261	소로1-113 시곡 603-3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2	사1 2	8	보행자 전용 도로	42	시곡 603-12	시곡 603-13	특수 도로	_	구미고 제2014-70호 (2014.5.29.)	
기 정	소 로	2	434	8	국 지 도 로	87	중로2-199 사곡 603-12	소로2-435 시곡 603-13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2	435	8	국 지 도 로	36	소로1-114 시곡 603-13	소로1-115 시곡 603-2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2	436	8	국 지 도 로	76	소로2-438 시곡 산22-5	소로1-112 사곡 415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2	437	8	국 지 도 로	98	소로2-438 사곡 산22-5	소로1-112 시곡 420-8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2	438	8	국 지 도 로	288	소로1-112 사곡 422-11	소로1-112 사곡 산22-2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ဢ	402	4	국 지 도 로	96	중로2-123 사곡 산18-1	사곡 410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3	403	4	국 지 도 로	264	중로2-200 사곡 산22-1	사곡 산20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7	규모					ادام			11 A	7 0	a1 =	비
구분	등급	류별	번 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고
기 정	소 로	3	404	4	보행자 전 용 도 로	30	중로2-199 사곡 603-10	대로 2-1 사곡 산12-1	특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3	405	4	보행자 전용도 로	33	중로2-199 사곡 603-2	대로2-1 사곡 산12-1	투수 5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3	406	4	보행자 전용도 로	34	소로1-115 사곡 603-2	대로2-1 사곡 산11-2	<u></u> 두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3	407	4	보행자 전용도 로	34	소로1-113 사곡 603-3	대로 2-1 사곡 산11-2	<u></u> 두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3	408	6	보행자 전 용 도 로	31	소로 1-113 사곡 603-146	대로 2-5 시곡 603-1	<u></u> 투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3	409	4	보행자 전용도 로	19	소로 1-112 사곡 415	대로 2-5 시곡 418-1	특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3	410	4	보행자 전 용 도 로	39	소로 1-112 사곡 422-95	대로 2-5 시곡 422-154	특수 도로	_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기 정	소 로	3	439	6	국 지 도 로	13	소로2-438 사곡 산22-6	시곡 산22-3	일반 도로	_	구미고 제2020-218호 (2015.8.12.)	
변 경	소 로	2	489	8	국 지 도 로	13	소로2-438 사곡 산22-6	사곡 산22-3	일반 도로	_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f	
소로3- 439	소로2- 489	■ 폭원확장 - B = 6m→8m	-	사곡동 허가 조 하여 진 ⁽	건(종	합허가	과-243		

(2) 주차장(변경없음)

(가)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m²)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의조 결정일	비고
기정	81	사곡1 주차장	사 곡동 603-26 일원	1,019.1	_	1,019.1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나) 공간시설

(1) 녹지

(가) 녹지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 시설의			Ę	년 적(n	n²)			
구분	표시 번호	시 ^결 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19	사곡 1녹지	경관 녹지	사곡동 산12-1 일원	1,985.1	-	1,985.1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변경	120	사곡 2녹지	경관 녹지	사곡도시 개발구역 남측 경계	12,789.7	감)23	12,766.7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0	사곡 2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A=12,787.7㎡→12,766.7㎡(감 23㎡)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진입도로 폭원 확장에 따른 경관녹지 면 적 축소

(2) 공원(변경없음)

(가) 공원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21.51	Ę	년 적(m	2)	-11 -1 .1		
구분	표시 번호	공원명	종류	조근 취시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8	사곡1 공원	근린공 원	사곡동 산18-1일원	23,089	_	23,089	구미고 제2014-70호 (2014.5.29)	
기정	166	구인	어린이 공원	사곡동 603-69일원	1,523.5	-	1,523.5	구미고 제2015-243호 (2015.11.9.)	

- 나.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 면	가 구	면 적	3	획 지	비고							
번 호	번 호	(m^2)	번호	면 적(m²)	비고							
합계	9가구	24,853.9		24,853.9								
소계	8가구	20,868.9	-	20,868.9								
			1	471.4								
			2	492.1								
단1	단1	2,517.1										
			4	524.5								
			5	515.3								
			1	523.9								
			2	522.8								
단2	단2 2,619.3 3 522.8 4 522.8											
			4									
			5	527.0	• 획지 최소면적 : 165㎡							
			1 437.9 • 획지의 분할 : 획지 최소									
단3	단3	1,332.4	1,332.4	1,332.4	1,332.4	1,332.4	1,332.4	1,332.4	1,332.4	2	445.4	만으로 분할 금지
			3	449.1	• 획지의 합병 : 연접한 두획지만 가							
			1	253.5	능(단 1회만 허용)							
			2	252.0								
			3	255.9								
			4	255.9								
단4	단4	2,550.4	5	257.0								
		2,000.1	6	255.2								
			7	254.2								
			8	255.9								
			9	255.8								
			10	255.0								
단5	단5	2,639.5	1	522.9								
긴	[건0	۵,000.0	2	267.6								

도 면	가 구	면 적	3	획 지	비고	
번 호	번 호	(m²)	번호	면 적(m²)	비 프	
			3	266.5		
			4	266.5		
			5	252.6		
			6	268.7		
		-	7	268.3		
			8	269.0		
			9	257.4		
			1	294.2		
			2	264.8		
	단6 단6		3	264.8		
다		2,096.3	4	259.9		
10	10	2,000.0	5	239.0		
		_	6	255.6		
		_	7	259.2		
			8	258.8		
		_	1	217.3		
			2	289.5		
			3	289.5	• 획지 최소면적 : 165㎡	
		-	4	289.5	• 획지의 분할 : 획지 최소면적 미	
단7	단7	2,885.2	5	283.3	만으로 분할 금지	
		,	6	364.2	• 획지의 합병 : 연접한 두획지만	
			7	289.5	가능(단 1회만 허용)	
		-	8	289.5		
		-	9	289.5		
			10	283.4		
		-	1	243.0		
			2	257.5		
-1.0	-1.0		3	279.5		
단8	단8	4,228.7	4	321.7		
			5	273.9		
			6	273.8		
			7	276.1		

도 면	가 구	면 적	1	획 지	ul –
번 호	번 호	(m²)	번호	면 적(m²)	비고
			8	269.9	
			9	252.2	
			10	284.6	
			11	295.6	
			12	379.2	
			13	274.9	
			14	276.7	
			15	270.1	
소계	1가구	3,985	-	3,985	드 기케바그 여 비
단9	단9	3,985	1	3,985	도시개발구역 밖

나) 공동주택용지

도 면	가 구	면 적	획 지		비	7		
번 호	번 호	(m²) 번호 면 적(m²		(m²)	번호 면 적(m²)		П	고
계	1가구	54,979		54,979				
공1	공1	54,979	1	54,979				

다) 준주거시설용지

도 면	가 구	면 적	1	획 지	비고		
번 호	번 호	(m^2)	번호	면 적(m²)	비 고		
합계	11가구	39,947.5		39,947.5			
소계	3가구	19,764	1	19,764			
근1	근1	10,155	1	10,155	ट रोगोम ो ७ से		
근2	근2	4,385	1	4,385	도시개발구역 밖		
근3	근3	5,224	1	5,224			

도 면	가 구	면 적	į	획 지	นไ ¬
번 호	번 호	(m²)	번호	면 적(m²)	비 고
계	8가구	20,183.5	1	20,183.5	
			1	511.1	
			2	540.0	
근4	[4	2,636.1	3	522.0	
			4	521.6	
			5	541.4	• 획지 최소면적 : 200㎡ • 획지의 분할 : 획지 최소
			1	437.3	면적 미만으로 분할 금지
근5	근5	1,833.2	2	463.0	• 획지의 합병 : 연접한 두
<u></u> 0			3	463.1	획지만 가능(단 1회만 허용)
			4	469.8	
		76 2.002.7	1	1,649.7	
7.0	70		2	483.7	
근6	근6	3,093.7	3	480.0	
			4	480.3	
			1	477.1	
			2	577.2	
근7	근7	2,391.8	3	424.4	
			4	450.8	
			5	462.3	• 회기 키스버거 · 0002
			1	413.6	• 획지 최소면적 : 200㎡ • 획지의 분할 : 획지 최소면
			2	440.1	적 미만으로 분할 금지
ユ٥	ے ا	2 564 0	3	434.6	• 획지의 합병 : 연접한 두획
근8	근8	2,564.9	4	427.5	지만 가능(단 1회만 허용)
			5	434.0	
			6	415.1	
7.0	70	0.770.0	1	419.0	
근9	근9	2,770.2	2	443.6	

도 면	가 구	면 적	Ţ	획 지	ul ¬
번 호	번 호	(m²)	번호	면 적(m²)	비고
			3	427.7	
			4	633.4	
			5	436.5	
			6	410.0	
		10 1,848.8	1	513.1	
근10	근10		2	498.9	
₩ 10	₩10		3	436.5	
			4	400.3	
			1	401.7	
			2	418.0	
711	711	0.044.0	3	446.1	
근11	근11	3,044.8	4	513.5	
			5	597.2	
			6	668.3	

라) 주차장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 호	번 호	(m²)	번호	면 적(m²)	비 고
계	1가구	1,019.1	- 1,019.1		
주1	주1	1,019.1	1	1,019.1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안)조서(변경없음)
 -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 단독주택 ●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그외 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2종일 반주거지역 내 건축가능용도 (주거용도 외 용도의 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수 없음) 			
			불허용도	■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운동시설 중 옥외골프장, 공장, 창고 설, 동식물관련시설			
		건	폐 율	60%이하			
단1~	단1~	용	적 률	250%० हो-			
단8	단8	충수	는(높이)	_			
		배	치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 권장 			
		⁷⁸⁰	태	 평자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도입 권장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기기는 보이지 않도록 차폐 권장 			
		외관	및 색채	 ■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및 구미시 색채가이드라인, 구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함 			
		건	축 선	■ 폭 8m도로와 접한 편측 가구에 건축한계선 2m 지정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에는 담장 등 시설물 설 치는 금하며, 보행이 가능한 보도형태로 조성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농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০]ই}
		용	적 률	250%이ō}
		충수	-(높이)	_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동·남·남서 방향을 주로 하여 배치 함으로써 채광, 통풍, 경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공1	공1	⁷ BO	태	 □ 건축물의 형태는 시야의 개방감, 일조, 통풍 등을 확보할수 있는 형태로 하며, 탑상형 및 4호 이하의 판상형 형태를 권장 □ 중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함 (다만,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코어부분에는 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장식물 처리를 권장
		외관	및 색채	■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및 구미시 색채가이드라인, 구미시 야 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함
		건	축 선	 건축한계선: 중로이상 접한 부분에 건축한계선 4m 확보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에는 담장 등 시설물 설치는 금하며, 가급적이면 휴식공간, 선형의 녹지축 및 가로형 공원 등을 조성

다) 준주거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용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 ド	불허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시설이 복합 된 건축물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 교시설 중 봉안당
		건	폐 율	60%० ठे}
		용	적 률	200%이하
		충	수(높이)	4층이하
근1~ 근3	근1~근3 (도시개 발구역 밖)	배	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 권장
	"2	·B ^o	태	 ■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기기는 보이지 않도록 차폐 권장
		외관	· 및 색채	■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및 구미시 색채가이드라인, 구미시 야간 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함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대로변 3m
		0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근4~ 근11	근4~근1 1	여 너	불허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시설이 복합 된 건축물 제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시설 중 봉안당
		건	폐 율	60%০ উ}
		용	적 률	250%০ র্চ}

도면 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층수(-	높이)	_
		배	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 권장
		ਲੇ	태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기기는 보이지 않도록 차폐 권장
		외관 및	빝 색채	■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및 구미시 색채가이드라인, 구미시 야간 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함
		건 출	흒 선	_

라) 주차장

도면 번호	위 치 (가 구)	구	분	계 획 내 용				
		용지정	용도	■ 주차장 및 부대시설				
		도불하	용도	■ 지정용도외 불허				
		건 폐	율	60%이하				
주1	주1	용 적	률	250%이하				
71	71	층수(높	-o])	_				
		외관 및	색채	 구미시 기본경관계획 및 구미시 색채가이드라인, 구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 하도록 함 				
		건 축	선	_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 구간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서 수립된 차량 출입 불허구간 적용	
공동주택 진출입구	 ■ 공동주택 진출입구 2개소 계획 ■ 공동주택 진출입구가 지정된 대지에서의 진출입구는 공동주택 진출입구 내에서 설치하여야 함 ■ 공동주택 진출입구가 지정된 대지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기타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일 경우 진출입변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이 1,000㎡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과 접한 전면도로는 가감속차선 확보 	
공공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 내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공동주택내에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연계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고려하여최소 4m이상으로 조성토록하여야함(주택사업승인시 제시) ■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장애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대중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토록함 	
보행교통	 ■ 폭원 12m 이상 도로 : 양측 보도 설치 ■ 폭원 10m 이상 도로 : 편측 보도 설치 ■ 공원 서측에 보행로 설치 ■ 사업지구 내부에 보행자 전용도로 7개소 설치(4m/6m) 	
주차시설	■ 노외주차장 부지 확보 및 각 세부시설별 적정 주차장 확보 권장 - 노외주차장 확보 : 1,015㎡(0.7%) - 장래 세부시설 건축계획 수립시 각 시설별 적정 주차 계획 수립	
교통안전 및 기타	 사업지구 외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신호등 : 2개소, 횡단보도 : 2개소 사업지구 내부 교통안전시설 설치 경보등 : 2개소 - 횡단보도 : 25개소 과속방지턱 : 14개소 - 반사경 : 12개소 험프형 횡단보도 : 1개소 	

2) 환경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	생태면적율 (%)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계	36,799.2	36,776.2	25.7	25.7		
공동주택	16,493.7	16,493.7	11.5	11.5	공동주택용지 면적에 30% 생태면적 확보	
단독주택	1,043.4	1,043.4	0.7	0.7	단독주택용지 면적의 5% 생태면적 확보	
준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1,009.2	1,009.2	0.7	0.7	준주거시설용지 면적의 5% 생태면적 확보	
공원·녹지	16,298.3	16,275.3	11.4	11.4	공원·녹지	
주차장	509.6	509.6	0.4	0.4	잔디블럭 설치	
도 로	1,445.0	1,445.0	1.0	1.0	인도 전면투수포장 4,816㎡	
도수로	_		_	_	_	

-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5. 기타 서류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계획과(054-480-5414) 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끝.

고령군 고시 제2021 - 642호

고령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일원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인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 및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고 령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공간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계 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군관리계획 내용(변경)

-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 유원지 결정(변경)

	도면	.1.11-1	A1 ~1		면적(m²)	최초	비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변경	2	농촌체험 및 가야국 역사루트재현 유원지	대가야읍 고아리 658번지 일원	170,629.9	증) 257.0	170,886.9	경상북도 고시 제2008-357호 (08. 08. 04)	

□ 유원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농촌체험 및 가야국 역사루트재현 유원지	■면적 변경(구역계 변경없음) - 위치 : 대가야읍 고아리658번지 일원 - 면적 : 170,886.9㎡ (증 257㎡)	■ 지적 경계측량시 누락된 2개필지 편입

- 2)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 □ 총괄표(변경)

				부지면적 (m²)		구성비	건축면적(㎡)				
	구	분	,	구시 닌 쪽 (Ⅲ,	(%)	바닥면적		연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70)	기정	변경	기정	변경	<u>ئد</u>
	합	계	170,629.9	증) 257	170,886.9	100.0	7,669.10	7,191.74	8,382.80	8,595.02	
	관리	시설	47,622.0	감) 544.5	47,077.5	27.6	172.00	249.81	172.00	237.51	
	도	로	24,022.0	감) 1,775.5	22,246.5	13.0	_	ı	_	_	
	광장/	/주차장	20,539.0	증) 1,074.0	21,613.0	12.7	_	ı	_	_	
L	기	타	3,061.0	증) 157.0	3,218.0	1.9	172.00	249.81	172.00	237.51	

		H 기 H 각 (2		그성비	건축면적(m²)				
구 분		부지면적 (m²)	구성비 (%)	바닥면적		연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70)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2
유희시설	6,951.8	감) 15.8	6,936.0	4.1	87.40	87.48	87.40	87.48	
휴양시설	13,839.4	감) 1,160.2	12,679.2	7.5	810.30	1,021.90	810.30	1,021.90	
특수시설	41,485.4	감) 4,699.4	36,786.0	21.5	4,473.50	3,465.76	5,187.20	4,905.10	
편익시설	1,468.2	증) 311.8	1,780.0	1.0	390.50	492.12	390.50	492.12	
운동시설	13,729.0	감) 850.	12,879.0	7.6	1,735.40	1,874.67	1,735.40	1,850.91	
기 타(녹지)	45,534.1	증) 7,215.1	52,749.2	30.9	_	_	_	_	

□ 세부시설 결정(변경)

			버기다	171(2)		건축규	구모(m²)		
시설 종류	도면 번호	시 설 명	부지면	[석(m)	바닥	면적	연민	면적	비고
0 11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70,629.9	170,886.9	7,669.10	7,191.74	8,382.80	8,595.02	
유희	3	소 계	6,951.8	6,936.0	87.40	87.48	87.40	87.48	
시설	1-Y-1	용사 체험장	3,041.1	2,671.0	87.40	87.48	87.40	87.48	
	1-Y-2	물놀이장	3,910.7	4,265.0	_		_	_	
휴양	ź	소 계	13,839.4	12,679.2	810.30	1,021.90	810.30	1,021.90	
시설	2-N-1	야영장(다목적마당)	2,414.0	2,419.0	-	_	_	-	
	2-N-2	고상가옥체험장 (야영장)	2,296.0	2,302.0	_	80.00	_	80.00	
	2-N-3	야영장	2,347.0	2,347.0	_	_	_	_	
	2-Y-1	평민숙박촌	1,690.4	1,888.0	282.40	253.44	282.40	253.44	
	2-Y-2	귀족숙박촌	3,830.8	2,580.0	411.60	482.40	411.60	482.40	
	2-Y-3	간이취사시설	1,261.2	765.0	116.30	116.32	116.30	116.32	
	2-Y-4	휴양쉼터	_	378.2	_	89.74	_	89.74	

			버기다	171(2)		건축규			
시설 종류	도면 번호	시 설 명	부지면	[석(m [*])	바닥	면적	연민	년적	비고
0 11	L'AL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특수	2	소 계	41,485.4	36,786.0	4,473.50	3,465.76	5,187.20	4,905.10	
시설	3-N-1	온실체험장	1,018.0	1,024.0	_	247.50	ı	247.50	
	3-N-2	동물농장(체험)	710.0	715.0	_			_	
	3-N-3	역사문화체험장	718.0	717.0	_	-	-	-	
	3-N-4	농촌문화재현장	1,589.0	1,605.0	_	22.50	_	22.50	
	3-N-5	농촌문화전시관	1,555.0	1,561.0	672.90	338.68	672.90	286.58	
	3-N-6	농산물체험장	1,397.0	1,402.0	_	-	_	-	
	3-N-7	과수체험장	1,976.0	1,981.0	_	_	-	_	
	3-Y-1	환영공간	2,035.5	1,668.0	322.00	154.08	399.80	231.84	
	3-Y-2	부출입구	80.9	89.0	61.60	61.56	110.20	110.16	
	3-Y-3	주 산 성	3,545.3	3,452.0	2,009.50	1,533.09	2,596.80	2,898.17	
	3-Y-4	고분벽화전시관	933.6	595.0	39.20	39.20	39.20	39.20	
	_	귀족촌전시관	575.7	-	102.20	_	102.20	_	
	-	구 신 정	429.8	-	13.00	-	13.00	_	
	3-Y-5	배제작재현촌	1,154.6	1,331.0	139.90	136.08	139.90	136.08	
	3-Y-6	상가라도못	6,319.0	6,219.0	_	9.00	_	9.00	
	3-Y-7	상가라도천	1,579.5	1,464.0	_	_	_	_	
	3-Y-8	움집재현촌	2,069.8	1,757.0	206.50	153.80	206.50	153.80	
	3-Y-9	철기문화재현촌	2,467.9	1,278.0	191.70	157.14	191.70	157.14	
	3-Y-10	토기제작체험촌	1,083.2	1,064.0	171.40	159.84	171.40	159.84	
	3-Y-11	건국설화공원	1,350.6	1,204.0	-	-	_	_	
	3-Y-12	가 야 산	2,186.0	2,141.0	516.60	453.29	516.60	453.29	
	3-Y-13	발굴체험촌	1,912.0	1,825.0	_	_	_	_	

				ㅂ기ㅠ	174(2)		건축규	}모(m²)		
시설 종류	도면 번호	시	설 명	무시면	!적(m²)	바닥	면적	연단	년 적	비고
0 11	6.4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_	봉	수 대	437.2	_	27.00	1	27.00	_	
	3-Y-14	수	변무 대	598.6	593.0	_	1	ı	_	
	3-Y-15	기	- 야 숲	3,763.2	3,101.0	_	-	-	_	
편익	3	소	계	1,468.2	1,780.0	390.50	492.12	390.50	492.12	
시설	4-N-1	농신	물판매소	394.0	399.0	105.80	105.84	105.80	105.84	
	4-Y-1	먹 :	거리촌	1,074.2	1,025.0	284.70	249.48	284.70	249.48	
	4-Y-2	판 1	매시설	ı	356.0	_	136.80	ı	136.80	
운동	19	소	계	13,729.0	12,879.0	1,735.40	1,874.67	1,735.40	1,850.91	
시설	5-N-1	기마처	험장(승마)	13,729	12,879.0	1,735.40	1,874.67	1,735.40	1,850.91	
관리	19	소	계	47,622.0	47,077.5	172.00	249.81	172.00	237.51	
시설	6-N-1	화	장 실	84.0	84.0	_	48.57	ı	36.27	
	6-N-2	광	장	5,524.0	6,202.0	_	1	-	_	
	6-N-3	도	로	12,589.0	12,312.5	_	1	ı	_	
	6-N-4	주	차 장	5,433.0	5,703.0	_	1	١	_	
	6-Y-1	관	리시설	1,087.8	1,076.0	172.00	160.92	172.00	160.92	
	6-Y-2	광	장	3,325.0	3,766.0	_	1	١	_	
	6-Y-3	도	로	11,433.0	9,934.0	_	ı	ı	_	
	6-Y-4	주	차 장	6,257.0	5,942.0	_	1	_	_	
	6-Y-5	해	자	1,889.2	1,985.0	_	ı	-	_	
	6-Y-6	화	장 실	_	73.0	_	40.32	_	40.32	
기타		소	계	45,534.1	52,749.2	_	_	_	_	
	7-1	녹	지	45,534.1	52,749.2	_	_	_		

□ 도로 결정(변경없음)

ЭН		규	모		-) L	연장	-a) 2J	スカ	기이었네	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고
기정	중로	2	N1	16.0	진입도로	71.2	남측구역계	중로3-N1	차량진입	
기정	중로	3	N1	12.0	진입도로	146.8	중로2-N1	소로2-N2	차량진입	
기정	소로	2	N1	8.0	국지도로	237.1	중로3-N1	북측구역계	차량진입	
기정	소로	2	N2	8.0	연결로	144.1	중로3-N1	소로3-N3	차량진입	
기정	소로	3	N1	6.0	연결로	165.0	소로2-N1	소로2-N1	차량진입	
기정	소로	3	N2	6.0	연결로	247.6	소로2-N1	기마체험장	차량진입	
기정	소로	3	N3	4.0	연결로	316.5	소로2-N2	소로3-N1	차량진입	
기정	소로	3	N	3.0	산책로	985.0	사업구역내	사업구역내	보행로	
기정	소로	3	Y1	3.0	진입도로	372.0	소로3-Y2	북측구역계	차량진입	
기정	소로	3	Y2	7.0~ 12.0	진입도로	349.0	남측구역계	숙박촌주차장	차량진입	
기정	소로	3	Y3	4.0	진입도로	5.0	농촌체험촌 구역계	해자	보행진입	
기정	소로	3	Y4	6.0	진입도로	9.0	농촌체험촌 구역계	주산성주차장	차량진입	
기정	소로	3	Y5	2.0	연결로	11.0	방문객주차장	주진입광장	보행로	
기정	소로	3	Y6	2.0	연결로	6.0	방문객주차장	주진입광장	보행로	
기정	소로	3	Y7	2.0	연결로	5.0	방문객주차장	주진입광장	보행로	
기정	소로	3	Y8	2.0	연결로	4.0	방문객주차장	주진입광장	보행로	
기정	소로	3	Y9	1.5	연결로	36.0	방문객주차장	주진입광장	보행로	
기정	소로	3	Y10	2.0~ 4.0	연결로	120.0	소로-Y3	주진입광장	보행로	
기정	소로	3	Y11	4.0	연결로	104.0	소로-Y2	환영공간	보행로	
기정	소로	3	Y12	4.0	연결로	14.0	먹거리촌목교	소로3-Y19	보행로	

ЭН		규	모		-) L	연장	-a) 2J	Z 7J	기수처리	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고
기정	소로	3	Y13	2.0	연결로	82.0	발굴체험촌	소로3-Y19	보행로	
기정	소로	3	Y14	4.0	연결로	23.0	소로3-Y19	상가라도광장	보행로	
기정	소로	3	Y15	2.0	연결로	19.0	철기문화 재현촌	건국설화공원	보행로	
기정	소로	3	Y16	4.0	연결로	12.0	상가라도광장	소로3-Y19	보행로	
기정	소로	3	Y17	1.2~ 5.0	연결로	25.0	소로3-Y19	소로3-Y18	보행로	
기정	소로	3	Y18	1.2~ 8.0	연결로	37.0	철기문화 재현촌	소로3-Y18	보행로	
기정	소로	3	Y19	4.0	연결로	468.0	발굴체험촌	철기문화재현촌	보행로	
기정	소로	3	Y20	1.0	연결로	83.0	소로3-Y21	상가라도광장	보행로	
기정	소로	3	Y21	1.0~ 2.0	연결로	70.0	소로3-Y19	배제작재현촌	보행로	
기정	소로	3	Y22	4.0	연결로	29.0	소로3-Y19	평민숙박촌	보행로	
기정	소로	3	Y23	4.0	산책로	47.0	숙박촌주차장	소로3-Y19	보행로	
기정	소로	3	Y24	2.0	연결로	69.0	소로3-Y19	주산성광장	보행로	
기정	소로	3	Y25	6.0	연결로	16.0	주산성주차장	주산성	보행로	
기정	소로	3	Y26	1.0	연결로	38.0	소로3-Y27	소로3-Y24	보행로	
기정	소로	3	Y27	1.0	산책로	51.0	소로3-Y24	고분벽화전시관	보행로	
기정	소로	3	Y28	1.2~ 3.5	산책로	56.0	상가라도광장	상가라도광장	보행로	
기정	소로	3	Y29	2.0~ 3.0	산책로	8.0	상가라도광장	소로3-Y28	보행로	
기정	소로	3	Y30	1.0	산책로	33.0	상가라도광장	소로3-Y30	보행로	
기정	소로	3	Y31	1.2	산책로	41.0	소로3-Y30	소로3-Y31	보행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ارد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丁世	등급	류별	번호	폭원	7 0	(m)	7	Ť	6	Ť	শ্ভপ্ত	고
기정	소로	3	Y32	1.2~ 8.0	산책로	77.0	소로3	-Y19	소로3	-Y32	보행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실시계획 인가 내용(변경)

1) 군 계획시설 사업 변경 내용(변경)

구분	사업명	시설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비고
기정	가야국 역사루트	공간시설	대가야읍	면적:170,629.9㎡	2012.02.16. ~ 2020.12.31.	
변경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유원지)	고아리 658번지 일원	면적:170,886.9m² (증 257.0m²)	2012.02.16. ~ 2021.12.31.	

※ 변경사유 : 지적경계 측량결과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성명 : 고 령 군 수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내용(변경) : 붙임과 같음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5) 기타 사항문의
- 1) 도시활력과 도시시설담당 (054-950-67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일 련 번	토지 소재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구 자		-권 이오 리관계 [/]		비
번 호	지	시킨	목	也吗 (m²)	也吗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고
	ヹ	11		170,629.9	170,886.9						
1	고아리	588	원	68,567.5	68,567.5	고령군					
2	고아리	528 -6	구	_	8.0	고령군					
3	고아리	655- 39	답	_	249.0	고령군					
4	고아리	658	원	99,490.1	99,490.1	고령군					
5	고아리	659	도	1,416.9	1,416.9	고령군					
6	고아리	660	구	1,155.4	1,155.4	고령군					

칠곡군 고시 제2021-84호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우리군 가산면 천평리 287-2번지 일원의 칠곡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칠 곡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 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며 학교부지의 일반재산 매각에 따라 군계획시설 에서 제척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7 H	도면	n Mai	시설의	ا دار		면적(m²)		키그거기시	ul =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가1	가산초등 학교	초등 학교	가산면 천평리 287-2 일원 (대로3-국5호 선변)	13,090	감)250	12,840	칠고제20호 (09.05.18.)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1	가산 초등학교	• 학교 면적 축소 - A = 13,090㎡ → 12,840㎡ 감) 250㎡	•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개인의 재산 권 보호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부지 에서 제척

3.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4. 이해관계인은 칠곡군 도시계획과(☎ 054-979-681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 군

공 고

구미시 공고 제2021 - 858호

구미 도시계획시설(자동자정류장:공동차고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구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동차고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관계 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한 내에 의견서를 구미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7.

구 미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구미시청 도시계획과 (☎ 054-480-5406)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산30번지 일원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구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동차고지) 사업명칭: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동차고지) 조성공사

5. 사업의 규모	○ 공동차고지 면적 = 39,910㎡
6.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구미시 봉곡동 167-8번지 ㈜구미화물운송연합 대표 정정문
7.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11. 10. 17. ~ 2020. 12. 31. ○ 변경 : 2011. 10. 17. ~ 2021. 12. 3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조서와 같음.

※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계획과(054-480-5406)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 니다. 끝.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번	위	치	지	토지 대장상	편입	소 유	- 자	소유권여	에 관한사항	비고
호	동	지번	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내용	성 명	11.75
	;	계		40,014	39,910					
						경상북도 구미시 해마루 공원로 111	이*경			
1	구포 1 동	산30	임	15,466	15,466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상동로 354	이*회			지상권 근저당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38	이*회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구미화* 운송연합	가압류	케이엠* 베스트(주)	
2	구포 동	산30 -3	임	11,436	11,436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아름씨* 에이플러 스㈜			지상권 근저당권
3	구포 동	산30 -6	임	4,737	4,737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아름씨* 에이플러 스㈜			지상권 근저당권
4	구포 동	산30 -10	임	1,106	1,002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아름씨* 에이플러 스㈜			지상권 근저당권

번	위	치	지	토지 대장상	편입	면입 소유자		소유권여	비고	
호	동	지번	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내용	성 명	7135
5	구포 동	산30 -11	임	757	757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아름씨* 에이플러 스㈜			지상권 근저당권
6	구포 동	산29	묘	6,512	6,512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구미화* 운송연합	가압류	케이엠* 베스트(주)	지상권 근저당권

청송군 공고 제 2021 - 449호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진보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공사』실시계획(변경) 인가 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7일

청 송 군 수

1. 인가(변경)신청의 요지

가. 건 명 : 진보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공사 [변경없음]

나. 사업개요 [변경없음]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비고
진보도시계획도로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81-18번지~	L=102.0m	
(중로2-1호선)개설공사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142-12번지	B=14.5m	

다. 사업목적 : 군민의 교통편익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변경없음]

라, 사업기간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1년 6월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2년 6. 30.

※ 변경사유 :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보상기간 소요)

마. 사업시행자 : 청송군수 [변경없음]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년 05월 17일 ~ 2021년 06월 07일(15일간)-국공휴일제외

나, 장 소 :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도시계획담당

3. 의견제출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양식에 따라 열람기 간내 제출

4. 편입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 조서 참조

5. 사업시행지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에 비치

6. 기타 문의사항은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도시계획담당(전화 870-6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보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 번	토지스	소재 지	지	번	지	목	지 (m	적 ²)	소	유	자	비 고
빈	읍면	리	본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명	14
계								891				
1	진보	이촌	81-19		납	갭	54	54		진보면 547-1	권*조	
2	F	=	142-12		납	꺕	53	53		진보면 리 74	김*자	
3	Ħ	"	127-2	127-6	납	납	813	195		진보면 14, A동 당인터빌)	김*남	
4	"	"	127-4		답	답	200	200	이촌리	진보면 51-2 T101-206	이*택	
5	"	"	126-1		답	답	195	195	,	'/	이*택	
6	"	"	32-1		답	답	194	194		진보면 리 98	박*실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조서

人出	토	지소지	내지	물건의	구조및	단위	소 유	자	nj a
순번	읍면	리	지번	종류	규 격	선귀	주 소	성 명	비고
계									
1	진보	이촌	127-2	대추나무	R7	8주	청송군 진보면 이촌3길 14, A동 102(진성인터빌)	김*남	

기 타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58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및 주소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점용위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682-24번지 일원
및 면적	면적 : 1,095m²
점용목적	점용목적 : 박곡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및 시설개요	시설개요 : 박곡배수장 토출관로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변경 : 2020년 12월 29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59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및 주소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점용위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297-1번지 일원
및 면적	면적 : 138㎡
점용목적	점용목적 : 이천배수장 진입도로 설치
및 시설개요	시설개요 : 이천배수장 진입도로 설치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13년 05월 23일부터 2018년 05월 22일까지 변경 : 2018년 05월 23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60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점 용 위치 및 면적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694-1번지 일원
	면적 : 109.16m²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이천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시설개요 : 이천배수장 진입도로 설치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16년 03월 20일부터 2021년 03월 19일까지 변경 : 2021년 03월 20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61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1-2번지 일원
	면적 : 170m²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화옥양배수장 설치
	시설개요 : 화옥양배수장 설치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03년 01월 15일부터 2013년 01월 14일까지 변경 : 2013년 01월 15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62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점 용 위치 및 면적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190-1번지 일원
	면적 : 148.13m²
점 용 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위천제방 배수암거 설치
	시설개요 : 위천제방 배수암거 설치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13년 04월 25일부터 2018년 04월 24일까지 변경 : 2018년 04월 25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63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점 용 위치 및 면적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본리리 142-1번지 일원
	면적 : 212m²
점 용 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본리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시설개요 : 본리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03년 01월 15일부터 2013년 01월 14일까지 변경 : 2013 01월 15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64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663번지 일원
	면적 : 17.5m²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지천양수장 설치
	시설개요 : 지천양수장 설치 1식
점용 기간	당초 : 1997년 04월 01일부터 2012년 03월 31일까지 변경 : 2012년 04월 01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65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753번지 일원
	면적 : 104m²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하리배수장 토출구조체 설치
	시설개요 : 하리배수장 토출구조체 설치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04년 01월 13일부터 2014년 01월 12일까지 변경 : 2014년 01월 13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66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점 용 위치 및 면적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 952-2번지 일원
	면적 : 2,174m²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하빈배수장 토출수조 설치
	시설개요 : 하빈배수장 토출수조 설치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04년 09월 17일부터 2014년 09월 16일까지 변경 : 2014년 09월 17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67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 1094-2번지 일원
	면적 : 265m²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봉촌배수장 토출암거 설치
	시설개요 : 봉촌배수장 토출암거 설치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04년 10월 14일부터 2014년 10월 13일까지 변경 : 2014년 10월 14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68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징리 294-3번지 일원
	면적 : 409m²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징리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시설개요 : 징리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07년 03월 23일부터 2012년 03월 22일까지 변경 : 2012년 03월 23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69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일원
	면적 : 603m²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토출수조 및 배수암거 설치
	시설개요 : 토출수조 및 배수암거 설치 1식
점용 기간	당초 : 1995년 05월 12일부터 2010년 05월 11일까지 변경 : 2010년 05월 12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70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27번지 일원
	면적 : 6,480m²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용수관로 설치
	시설개요 : 용수관로 설치 1식
점용 기간	당초 : 1992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11월 29일까지 변경 : 2012년 11월 30부터 2027년 06월 30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71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장
	주소 : 경북 영천시 주남1길 39-7번지
점 용 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962-1번지 일원
	면적 : 626m²
점 용 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배수문확장공사
	시설개요 : 배수문확장공사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00년 06월 26일부터 2010년 06월 25일까지 변경 :2010년 06월 26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72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장
	주소 : 경북 영천시 주남1길 39-7번지
점 용 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관정리 675-1번지 외 3필지 일원
	면적 : 442m²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유출수조 설치
	시설개요 : 유출수조 설치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14년 08월 28일부터 2019년 08월 27일까지 변경 : 2019년 08월 28부터 2024년 06월 30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74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장
	주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138-5
점 용 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43-1번지 일원
	면적 : 1,510.29m²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해평 보조취수시설
	시설개요 : 해평 보조취수시설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16년 05월 24일부터 2021년 05월 23일까지 변경 : 2021년 05월 24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75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1. 5. 17.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서라벌도시가스(주) 주소 : 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 183(용강동)
점 용 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문외동 317번지 및 완산동 1048-1번지 일원 면적 : 165㎡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도시가스관로 매설
	시설개요 : 도시가스관로 매설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16년 06월 13일부터 2021년 06월 12일까지 변경 : 2021년 06월 12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 타

지 시 사 항

도지사 지시사항

- 2021. 5. 11.(화) 확대간부회의 시 -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훈시	 ○ 능동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경북 미래먹거리 발굴 추진 - 타 지역, 타 기관(국책연구기관 등) 방문 및 전문가와 소통협업 상시 추진 - 개인 및 조직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타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화 추진 	전부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처청 사사